

2006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의안 번호	1218
----------	------

제안일 : 2006. 11. 1.
제안자 :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제안이유

-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, 의회활동과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
-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감 사 일 : 2006. 12. 7 (목)
- 감사대상기관 : 종로구 의회사무국
- 감사반의편성 : 나 승 혁 의원 외 4인
- 감 사 장 소 :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실

3. 계획(안) : 별 첨

4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
-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-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, 의회활동과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,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
-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2. 감사일정 및 장소

- 감사일시 : 2006. 12. 7 (목) 11:00
- 감사장소 :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실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 : 종로구 의회사무국

4. 감사반 편성

- 위 원 장 : 나 승 혁
- 부위원장 : 김 성 배
- 감사위원 : 김 성 은, 안 재 홍, 이 숙 연

5. 감사방법

가. 감사방법

- 현장 확인 또는 보고·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
- 업무현황보고 청취, 질의·답변

나. 주요 감사내용

- 예산집행 사항

- 의안처리현황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
-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
-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감사진행순서

-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
- 의사일정 상정
- 관계공무원 선서
-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·답변
-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·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라.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

- 보고 사항
 - 보고내용 : 업무현황
 - 보고일시 : 2006. 12. 7 (목) 11:00
 - 보고장소 : 감사장
- 서류(자료)제출 요구
 - 서류(자료)제출 요구사항 : 2005년 11월 ~ 2006. 10월말까지
예산집행 현황
 - 제출일시 : 2006. 11. 17
 -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
 - 제출부수 : 40부
-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 - 출석 일시 : 2006. 12. 7 (목) 11:00
 - 출석공무원 : 의회사무국장
 - 출석 장소 : 감사장

6. 감사도중 감사계획서 변경

- 감사 도중에 감사일정 조정,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

7. 감사의 한계

-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사항 금지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)
-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)
-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음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)

8. 행정사항

가. 보고·서류의 제출요구

-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후 수감자료에 대한 각 감사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·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
-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보고·서류의 제출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 요구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·서류의 추가제출 요구는 늦어도 감사실시 3일전까지 도달 되도록 송부)

나.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: 의회사무국장

다.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,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
-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
 -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
 -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
 - 감사결과 처리의견 : 시정·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
 - 기타 특기사항 및 중요 근거서류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

시행일자 : 2006. 11.

수 신 : 종로구의회의회장

제 목 :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요구

1.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.

가. 출석일자 : 2006. 12. 7 (목) 11:00

나. 출석대상 : 관계공무원(의회사무국장)

다. 출석요구이유 : 2006년도 업무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